

『己卯錄補遺』의 板本과 書名에 대한 검토

- 규장각 소장 『大東野乘』 所收本을 중심으로 -

송웅섭*

-
- | | |
|---------------|--------------|
| 1. 머리말 | 4. 書名에 대한 검토 |
| 2. 저자 安瑤에 대하여 | 5. 맺음말 |
| 3. 板本에 대한 검토 | |
-

초록: 본고는 선조 연간 안로에 의해 편찬된 『기묘록보유』의 저술 배경과 판본 사항, 서명 등을 검토한 논문이다. 저자 안로는 기묘사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가문의 후예로서, 부친 안처겸의 옥사에 연좌되어 노비로 정속되기도 했지만, 풀려난 뒤로는 가문의 재건과 기묘사림의 행적 정리에 힘을 기울여 『기묘록보유』를 편찬하기에 이른다.

현재 『기묘록보유』는 『대동야승』 소수본과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등 3종이 확인되고 있다. 3종 모두 필사본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편이다. 『대동야승』에는 『기묘록보유』 외에도 저자미상의 『기묘록속집』과 『기묘록별집』이 수록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 두 책 모두 안로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후기 사료들에는 ‘기묘록’이라는 서명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묘록』이라는 별도의 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안로의 저술과 김육의 『기묘제현전』을 ‘기묘록’으로 범칭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던 현상이었다. 다만, ‘기묘록’이라는 서명에 있어서는 안로가 편찬한 3책에 모두 ‘기묘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안로의 저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 안로, 기묘사림, 『기묘록보유』, 『기묘록속집』, 『기묘록별집』, 『대동야승』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기묘사화 이후 기묘사림들의 행적을 정리한 책자들이 하나 둘 작성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는 思齋 金正國의 「己卯黨籍」이었다. 기묘사림의 일원이기도 했던 김정국은 사화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93명을 추려 이름과 관직, 처벌 내용 등을 간단하게 정리한 「기묘당적」을 작성하였다. 「기묘당적」의 뒤를 이어 선조 연간 安瑠의 『己卯錄補遺』가 작성되었다. 안로는 「기묘당적」에서 빠진 사람들을 추가하는 한편 사화 이후의 상황까지 상세하게 정리한 『기묘록보유』를 편찬하였다. 이후로도 金堉의 『己卯諸賢傳』과 硯山 道統祠의 『己卯名賢錄』이 仁祖代와 高宗代에 간행되어 기묘사림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안로의 『기묘록보유』는 기묘사림을 소개하고 있는 여러 책자들 중의 하나이기 는 하지만, 다른 기록들에 비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묘록보유』에서 정리한 내용들이 이후 간행되는 책자들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로가 상세하게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까지도 기묘사림들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풍부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중요도에 비해 『기묘록보유』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다. 몇몇 논문에서 『기묘록보유』를 소개하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¹⁾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저자 및 저술 배경, 판본, 서명 등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묘사림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라 할 수 있는 『기묘록보유』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묘록보유』를 작성한 안로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연유로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는지, 『기묘록보유』의 판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기묘록보유』와 명칭이 비슷한 『기묘록

1) 『기묘록보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연구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가 된다. 장영희, 1996 「기묘록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용섭, 2001 「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 배경」, 『한국사론』 45; 장영희, 2004 「16세기 필기의 일고찰-기묘록과 용천담적기」, 『민족문학사연구』 26.

속집』·『기묘록별집』과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기묘록보유』라는 서명은 정식 명칭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大東野乘』 所收本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동야승』에는 『기묘록보유』 외에도 『己卯錄續集』·『己卯錄別集』이 함께 수록되어 있고, 또 이들 3편의 관계를 통해 저자 안로와 편찬 배경 등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고를 통해 기묘사림의 행적을 상세하게 정리한 안로와 그의 저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깊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저자 安路에 대하여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기묘록보유』는 안로에 의해 선조 연간에 편찬되었다. 하지만 저자 안로에 대해서는 생몰년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에 대한 언급 대부분이 『기묘록보유』와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안로에 대한 설명은 그에 대한 몇몇 언급과 부친 및 친지들에 대한 기록 등을 통해 다소 거시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

안로의 본관은 順興으로, 조선 전기 순흥 안씨는 成倪의 『慵齋叢話』에서도 鉅族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명문 가문이었다. 당장 안로의 증조부인 安敦厚는 5형제 중 4명이 문과에 합격하고 다른 한 명도 무과에 합격하는 등 혼치 않은 이력을 갖고 있었다.²⁾ 그의 조부와 부친 역시 높은 명성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조부 安瑒은 趙光祖 등 기묘사림의 진출을 돕고 이후에도 능력 있는 인사들의 등용에 적극적으로 임해 기묘사림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관직도 좌의정에 이르렀다.³⁾ 부친 安處謙 역시 成均館 掌議를 역임하면서 鄭夢周·金宏弼의

2) 安鎮洪 編, 1983 『順興安氏族譜』, 回想社.

문묘중사와 소격서 혁파 상소를 주동하고 賢良科에도 합격한 인물이었는데,⁴⁾ 현량과에는 부친뿐만 아니라 安處誠·安處謹 등 그의 숙부들 또한 함께 합격하였다. 현량과 합격자 28명 가운데 3명이나 그의 집안에서 선출되었던 것인데, 당시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지나친 영화라며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다고 한다.⁵⁾

이처럼 번창했던 안로의 집안은 기묘사화를 겪으며 격랑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기묘사화 2년 뒤에 일어난 ‘安處謙의 獄事(辛巳誣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만다. 사실 1519년(중종 14)에 일어났던 기묘사화 당시 공식적으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조광조 한 사람 뿐이었다. 적어도 가문이 송두리째 몰락하는 그런 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 ‘안처겸의 옥사’가 일어나면서다.⁶⁾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사건은 안로의 부친 안처겸이 핵심 주모자로 지목된 사건이었다. 기묘사화 이후 안처겸 등은 ‘간신들’이 득세하는 시국을 개탄하면서 南袞과 沈貞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게 된다. 함께 논의했던 사람은 평소 친분이 깊었던 종친 李正淑과 현량과 합격자 權礪, 그리고 안처겸의 庶外四寸 宋祀連과 송사련의 처남 鄭詳 등이었다. 시국과 관련한 거친 언사들이 오가는 와중에 안처겸의 동생 안처함은 부친 안당에게 이들의 모의를 전하였다. 놀란 안당은 안처겸을 데리고 황급히 음성으로 내려가기에 이른다.⁷⁾ 직전에 일어났던 金湜의 망명 사건

3) 『중종실록』 권24, 11년 2월 28일(기묘) “사신은 논한다. 반석평의 자급이 겨우 종5품이었는데 판서 안당이 계청하기를 ‘석평의 자급은 비록 準職에는 미달하나, 재주가 문무를 겸했으니 탁용하여 시험해 볼 만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안당의 行政이 자급의 차례에 구애하지 않는 것이 이런 유가 많았다. 또 반석평은 한미한 출신으로 비록 특이한 재주는 없으나, 안당이 능히 薦拔하여 시속에 구애받지 않았으므로, 훗날 어진이를 기용하는 길을 만들었다.”

4) 안로, 『기묘록보유』 「안처겸전」

5) 『중종실록』 권35, 14년 4월 20일(계미) “사신은 논한다. 안당의 세 아들이 일시에 급제하였으므로, 임금이 中使를 보내어 술과 고기를 많이 하사하여 하례하는 뜻을 보이니, 사람들은 모두 이를 영광으로 여겼으나 식자들은 이것이 안씨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6) 안처겸의 옥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송웅섭, 2005 「기묘사화와 기묘사림의 실각」 『한국학보』 119, 103-109면.

7) 안로, 『기묘록보유』 「안처함전」

역시 이와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어 가는 듯 했으나 뜻밖에도 일가붙이었던 송사륜이 모의 사실을 고변하면서 옥사가 시작되었다. 송사륜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안처검을 배웅 나갔다가 헤어지면서 그로부터 종이에 쓴 음식물을 건네받았다. 한데 이를 먹으려다가 종이에 적힌 100여 명의 인사들을 발견하고는, 이 人名件記를 근거로 안처검이 대신을 모해하려는 증거를 삼아 이들을 고발했다. 공초가 진행되는 초기만 하더라도 이 사건은 안처검이 남곤 등을 제거하려 한 ‘대신위해사건’ 정도로 종결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도망갔던 宗室 인사 이정숙이 체포되면서부터 역모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남곤 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진했던 기묘사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이정숙에 대한 22차례의 형신 끝에 이들이 중종을 폐위하려 했다는 고백을 받아내면서 이 사건은 역모사건으로 규정되었다. 그 결과 송사륜이 바친 인명건기에 수록된 사람들 전체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묘사화 때 목숨을 겨우 부지했던 김정, 기준 등에게도 죄가 추가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기묘사림들 전체가 역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은 혹심했다. 대신을 제거하고 중종을 폐위시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안처검은 이정숙, 권전과 함께 능지처사 되었다.⁸⁾ 안처검의 동생 안처근은 형장을 맞다가 죽음에 이르렀으나 역시 능지처사되었고,⁹⁾ 부친 안당은 불고지죄로 교형에 처해졌다. 다행히 안당의 세 아들 가운데 안처함만이 모의 사실을 부친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부지했으나, 가산은 적몰되고 노비로 정속되었다. 안처검의 말아들이었던 안로 역시 노비 신분이 되었다.

부친의 옥사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난 안로의 집안은 이후 기묘사림의 복권과 궤를 같이하며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1537년(중종 32) 金安老가 축출되고 기묘인들에 대한 복권이 진행되는 와중인 1540년(중종 35) 안로 역시 사면을 받았다.¹⁰⁾

8) 『중종실록』 권43, 중종 16년 10월 16일(갑오)

9) 안로, 『기묘록보유』 「안처근전」

10) 안로, 『기묘록보유』 「안처검전」

1566년(명종 21)에는 안처함의 아들인 安垸이 안당을 신원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려 허락을 받았다.¹¹⁾ 1568년(선조 1)에는 부친과 숙부들의 현량과 자격도 회복된다. 현량과 합격자들에 대한 복권은 인종 연간에 조처가 취해진 바가 있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박탈되었고 1568년(선조 1) 10월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 한편, 1579년(선조 3) 柳希春 주도하에 『國朝儒先錄』이 저술됨으로써 조광조의 위상은 마침내 儒先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부친의 옥사로 몰락했던 그의 가문이 명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기도 했다.

안로의 저술은 이처럼 풍비박산 난 그의 집안이 차츰 소생해가며 가문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로는 『기묘록보유』 말고도 「己卯年薦科榜目」이라는 현량과 방목을 간행하는 일도 주관하고 있었는데,¹²⁾ 기묘사림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들은 일차적으로는 기묘사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몰락한 가문을 재건하는 일이기도 했다.

한편 선조 연간 안로의 집안은 또 한 차례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에는 공격을 받는 쪽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 1586년(선조 19) 그의 집안에서는 고변으로 집안을 몰락시켰던 송사련의 자식들을 노비로 정속시킬 것을 요청하였다.¹³⁾ 안로의 증조부 안돈후는 重畝이라는 천첩이 있었는데 증금에게는 이미 딸 甘丁이 있었다. 증금의 딸 감정이 바로 안처겸의 옥사를 일으킨 송사련의 모친인데, 옥사 이전에는 안당과 안처겸이 감정과 송사련을 잘 보살피 주어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나, 고변 이후로 철천지원수가 되었던 것이다. 선조 즉위 이후 기묘사림에 대한 추숭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안당에게 시호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송사련의 고변이 과장되었음이 지적되기도 했는데,¹⁴⁾ 안로 집안에서는 천첩 소생인 감정을 안돈후의 딸로 삼은 일이 없으며, 송사련의 자식들을 모두 자기 집안의 노비로

11) 안로, 『기묘록보유』 「안당전」

12) 盧守愼, 『蘇齋集』 권7, 「己卯年薦科榜目跋」

13) 당시 봉당 간의 대립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동인들이 서인측 謀主라고 인식했던 송익필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안로의 집안을 충동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14) 안로, 『기묘록속집』 「송사련전」

정속시켜야 한다고 소송을 냈던 것이다.¹⁵⁾

이 과정에서 안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기묘록속집』에 수록된 「송사련전」에는 그의 가족 사정이 소개되는 한편, 송사련의 자식들을 庶孽로 지칭하면서 이들이 법을 속이고 과거를 보다가 停擧를 당한 일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¹⁶⁾ 안로 역시 송익필 등을 자기 집안의 노비로 정속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로 볼 때 그가 이 송사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에 종합해 보면, 『기묘록보유』의 저자 안로는 당대 손에 꼽히는 명망 가문인 순흥 안문 출신으로서, 조부·부친·숙부가 모두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안처겸의 옥사가 일어나며 집안 전체가 송두리째 몰락하고 본인도 노비로 정속되는 시련을 겪게 된다. 이후 기묘사림이 신원되는 과정에서 안로 역시 노비 신분에서 풀려났고, 이후 부친을 비롯해 기묘사림과 관련한 기록들을 수집해 나가며 「기묘년천과방목」을 간행하고, 김정국의 「기묘당적」을 기초로 기묘사림들의 행적들을 상세하게 보충한 『기묘록보유』를 편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선조 연간 송사련의 자식들을 노비로 환속시키는 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3. 板本에 대한 검토

1) 『大東野乘』 所收本의 구성과 내용

안로는 김정국의 「기묘당적」이 소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조광조를 비롯한

15) 고전번역원, 『(국역)연려실기술』 8권, 「중종조고사본말」 ‘신사년 안처겸 옥사’ “송익필 墓礪에는, 감정을 안돈후의 딸로 삼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안당의 자손을 사주하여 안돈후의 딸이 아니라고 속여 말하였다고 하였다.”

16) 안로, 『기묘록속집』 「송사련전」. 필자는 『기묘록속집』의 저자가 안로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명, 생년, 자, 호, 사마시 합격년, 문과 합격년, 최고 관직, 피화 사실, 복권 여부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가 기묘사림에 대한 저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선조 연간은 기묘사화가 일어난 지 50여 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화인들의 행적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었다. 아울러 수록 대상을 확대하여 「기묘당적」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추가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안로는 대대적인 보충 작업을 벌여 당시까지 기묘사림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여기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들을 추가했다.

안로가 편찬한 『기묘록보유』는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은 독립된 형태가 아닌 『대동야승』(奎 3654) 속의 한 편으로 수록되어 있는 판본이다.¹⁷⁾

『대동야승』에 수록된 『기묘록보유』는 기묘사림 및 기묘사화에 연루된 129명의 사적들을 傳의 형태로 기술하고 있다. 구성상으로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 각각 94인·35인을 소개하고 있다. 『기묘록보유』의 이 같은 구분은 수록 인원수에서만 보면, 김정국의 「기묘당적」¹⁸⁾ 93인에 새로이 36인을 추가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¹⁹⁾ 하지만 형태상으로는 『기묘록보유』가 「기묘당적」에서 정리한 인사들에 몇

17) 『대동야승』 목록상에는 권5·권10·권11이 기묘사림과 관련된 기록으로 되어있는데, 권5는 『기묘록보유』의 목차만 실려 있고 실제 내용은 『五山說林草藁』가 대신 들어가 있다. 아마도 『대동야승』 필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동야승』에 수록된 기묘사림 관련 기록은 권10에 『기묘록보유』가 권11에 『기묘록속집』과 『기묘록별집』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18) 「기묘당적」은 김정국의 문집인 『사재집』 권4에 수록되어 있다.

19) 『대동야승』에 수록된 「기묘록보유」의 체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상하 2권으로 나뉘어 있으나 상권에는 ‘추록’ 부분에 구수담과 이준경 두 사람을 구분하였고, 그 다음에는 ‘천거과’라는 제목 하에 현량과 합격자 28인을 차례로 신고 있는데, 하권의 첫 번째 두 번째 인물까지가 현량과 합격자이다. 추록이라고 되어 있는 구수담과 이준경은 「기묘당적」에 이미 들어 있는 사람들로 추록 대상이라 할 수 없고, 하권에도 현량과 합격자인 경세인이 들어가 있어 구분이 깔끔하지가 않다.(다만, 추록된 인사들 가운데는 「기묘당적」에서 현량과 합격자 중에 빠뜨린 ‘이영’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가 추정하기로는 「기묘록

사람을 추가한 것이기는 해도,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기묘당적」에서 빠뜨린 몇몇 인사들을 추록한 데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편자 안로가 해당 인사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내용을 대폭 확대시킴으로써, 후대에 기묘사림과 관련한 풍부한 사실들이 전달될 수 있게 했다는 의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로가 『기묘록보유』를 정리해 나갔던 방식은 일단 ‘○○傳’이라는 제목 아래에, 제일 먼저 「기묘당적」에서 소개한 내용을 수록하고, 그 다음에 「思齋摭言」·「陰崖日錄」·「觀物筆記」·「僭言」·「師友名行錄」·「稗官小錄」 등에서 해당 인물과 관련된 기사를 채록하여 轉載한 뒤, 마지막으로 ‘補遺’ 혹은 ‘補’라는 표시 하에 자신이 직접 보고 듣거나 새롭게 수집한 사실들을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丙申錄」·「退溪集」 등 해당 인물과 관련한 기록이 있을 경우 인용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기묘사화 이후 이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기록들을 찾아 우선적으로 정리한 다음, 여기에 자신이 직접 수집한 사실을 ‘보유’라는 항목을 달아 추가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안로 자신이 새롭게 추록한 인사들의 경우에는 ‘보유’라는 표시 없이 자신이 새롭게 확보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대동야승』에는 『기묘록보유』 바로 뒤에 저자 미상의 『기묘록속집』과 『기묘록별집』이 수록되어 있다. 『기묘록속집』과 『기묘록별집』은 『기묘록보유』와는 달리 누가 작성했는지를 밝히는 기록이 없다.²⁰⁾ 따라서 우선적으로 두 책의 저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묘록속집』에 대해 살펴보면, 이 책은 〈京外官同薦人〉·〈未亂時政府六曹

보유』가 후대에 轉寫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종이 생기지 않았나 추정된다. 즉, 안로가 처음 「기묘록보유」를 편찬할 당시 상하 2권으로 구성하였는데, 상권에는 「기묘당적」에 수록된 93인을 신되, 현량과 합격자를 한 데 모아 후반부에 수록하고, 하권은 「기묘당적」에 수록되지 않은 인사들을 ‘추록’하여 실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큰 틀에서 보자면 「기묘록보유」의 상권에는 「기묘당적」에 수록된 인물이, 하권에는 안로가 새롭게 추록한 인물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 『대동야승』의 편자가 『기묘록보유』와 나머지 두 책의 저자가 같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를 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책의 저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臺諫侍從人道方伯)·〈亂後追罪時政府六曹臺諫侍從〉·〈坐黨人員〉·〈構禍事蹟〉·〈誅奸罪目〉·〈禍媒〉·〈伸冤訴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묘록보유』가 기묘사림 개개인에 대한 사실을 정리한 기록이라면, 『기묘록속집』은 현량과 추천인, 사화 당시 朝廷의 구성, 기묘사화의 전개 과정, 피화인 분류, 사화 후 신원 노력 등 기묘사화 자체는 물론 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변 사실들을 정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나마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京外官同薦人〉은 현량과에 천거된 사람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현량과가 시행될 당시 京外에서 모두 120인을 추천받아 그 중 28인을 선발했는데, 합격하지 못한 92명 가운데 78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간단한 신상 정보와 추천 사유를 적었다.²¹⁾

〈未亂時政府六曹臺諫侍從人道方伯〉은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직전 조정의 주요 관직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기록이며, 〈亂後追罪時政府六曹臺諫侍從〉은 기묘사화 직후 교체된 조정 인사들을 정리한 기록이다. 대체로 사화 전후 조정 인사들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사화를 주도한 인사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이 사화 후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坐黨人員〉은 기묘사화에 연루된 인사들을 처벌 유형에 따라 분류한 기록이다. 竄逐類, 削奪類, 罷職類, 被斥類, 被罪類 등 기묘사화 당시 처벌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말미에는 ‘金湜 亡命事件’과 ‘安處謙 獄事’에 연루되어 처벌된 인사들도 기록하고 있다.

〈構禍事蹟〉은 기묘사화의 전말을 기록한 내용으로, 신씨복위상소사건을 중심으로 신료들이 분기되며 조광조 등이 득세한 상황, 신씨복위상소사건 이후 실세한 인사들이 사화를 주동한 사실, 중중이 밀지를 내리며 사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1) 노우명, 유맹달, 박계효, 송석현, 임말손, 변벽, 형사보, 유자방, 정경, 박찬, 이종경, 신겸, 정세경, 김석홍, 홍등, 신광록, 이후, 여희단, 목희중, 이문건, 여희림, 김안도, 이백록, 신명화, 김인손, 허균, 김만억, 홍사부, 김창, 김진중, 원계채, 박세훈, 이은, 이세번, 이선장, 우순필, 최상, 이세웅, 박두남, 송미창, 윤거신, 이광식, 박번, 문준, 문희지, 한계유, 김인범, 진진, 허초, 허자, 김시창, 박훈, 이영우, 유여주, 신세경, 김윤중, 서경덕, 윤환, 정소, 이운문, 김증, 상진, 김극양, 김승중, 이난손, 이혜, 박이홍, 장응두, 최필성, 어득한, 김응청, 김세보, 김상, 손계돈, 이인건, 이정, 박덕손, 금원정.

있던 정황 등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사화 당일 신무문이 열리고 조광조 등이 나치되어 즉결 처형될 뻔했던 일, 정광필·이장곤 등이 이를 만류했던 일, 조광조 등에 대한 공초 내용, 김식의 망명, 안처겸의 옥사, 기묘사화 주동자들의 최후, 기묘사림의 신원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묘사화를 중심으로 한 중종대 정치사 서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誅奸罪目〉은 심정과 남곤이 처벌되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다. 1530년(중종 25) 대사헌 김근사와 대사간 권예가 심정의 죄상을 아뢰어 이듬해 처형된 사실과, 1568년(선조 1) 삼사에서 차자를 올려 남곤의 잘못을 밝혀 관작이 삭탈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禍媒〉는 기묘사화를 주동하거나 기묘사림의 처벌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심정·남곤·홍경주·이항·이빈 등을 비롯해, 김식의 망명 때 이들을 무고했던 이신, 안처겸의 옥사를 엮어 낸 송사련과 정상 등에 대한 기록이다. 일종의 ‘악인열전’으로 『기묘록보유』를 통해 기묘사림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던 것과 대척점에 서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伸冤訴狀〉은 기묘사화 이후 기묘사림의 신원을 요청했던 상소문들을 모은 것이다. 모두 6편의 상소가 수록되어 있는데, 생원 이종익이 1529년(중종 24) 올린 상소를 시작으로 1537년(중종 32)에 성균관에서 올린 상소, 중종 말 조광조와 김정의 관작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소, 1545년(인종 1) 조광조의 신원을 요청한 상소, 1568년(선조 1) 홍문관에서 조광조의 추숭을 요청하는 상소, 1579년(선조 12) 백인걸이 조광조의 문묘 배향을 요청한 상소 등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묘록별집』은 『대동야승』 권11에 『기묘록속집』과 같은 권에 수록되어 있다. 『기묘록별집』의 내용은 〈諸賢封事〉라는 항목 하에 〈丁丑訥齋忠庵請復廢妃愼氏〉·〈丁丑韓松齋辭持平因陳時弊〉·〈戊寅弘文館請革昭格署〉·〈己卯七月大司諫李成童死諫李清獻納宋好智正言金鈺權碩等疏〉·〈己亥樽巖請繼絕世上中宗〉·〈丁丑太學生請圖隱鄭文忠公配享夫子廟庭八月生員臣權碩所製〉 등 모두 6편의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다. 『기묘록속집』 말미에 수록된 상소문이 기묘사림의 신원과 추숭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여기에 수록된 상소문은 사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기묘사림 당

사자들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한 상소문들이다. 즉, 박상·김정의 신씨 복위 상소, 한충의 양민 보호 상소, 조광조의 소격서 혁파 상소, 이성동·송호지·김익·권전 등의 성학 권면 상소, 이연경의 연산군·노산군의 후사를 세울 것을 요청한 상소, 권전 등의 정몽주 문묘종사 상소 등 모두가 기묘사립 당사자의 상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대동야승』에 수록된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 3편은 기묘사립의 행적을 정리하거나(『기묘록보유』), 기묘사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변 사실들을 정리하고(『기묘록속집』), 기묘사립 당사자의 적극적인 시정 개혁안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기묘록별집』), 일련의 연속성을 지닌 자료들이 한데 묶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己卯錄補遺』·『己卯錄續集』·『己卯錄別集』의 관계

그러면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다시 말해서 『대동야승』의 편자는 어떤 연유에서 이들 3편을 같이 수록한 것일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손쉬운 추정은 이들 모두 안로가 편찬한 동일 작자의 저술이라는 추측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묘사립 및 기묘사화와 관련된 안로의 저술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을 비롯해 『국역 대동야승』(고전번역원)의 해제 등에는 『기묘록속집』과 『기묘록별집』의 저자가 불분명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기묘록속집』과 『기묘록별집』이 과연 안로의 저술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필자는 이들 모두가 안로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비록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대동야승』의 편자가 『기묘록속집』과 『기묘록별집』의 저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필자는 『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의 내용별 관계를 고민해 본 결과, 이들 3편이 모두 안로에 의해 저술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일단, 눈에 띄는 사실은 이들 3편의 제목이 모두 '기묘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이 『대동야승』에서 붙인 정식 서명이었다. 『대동야승』 편자가 임의적으로 붙인 것 같지는 않고 수집 당시의 서명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들 3편의 관계는 매우 긴밀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기묘록속집』의 〈화매〉에서 인물을 기술한 방식이 『기묘록보유』의 인물 기술 방식과 같다. 〈화매〉에는 심정·남곤·홍경주·이항·이빈·이신·송사륜·정상 등 총 8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김식의 망명 때 이들을 무고한 '이신'은 「기묘당적」에서도 별도로 다룬 인물인데, 〈화매〉 '이신'조에서는 먼저 「기묘당적」에서 언급한 사실을 수록하고 그 다음에 '補遺'라는 구분 하에 그와 관련해 새롭게 얻은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남곤'조에 있어서도 「사재적언」·「관물필기」에 기록된 남곤에 대한 일화를 적은 뒤 '보유'라는 표시 하에 새로이 추가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전의 언급이 없는 나머지 인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묘록보유』에서 추록한 인물들과 같은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데, '보유'라는 표시 없이 저자가 수집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묘록보유』와 『기묘록속집』의 인물 기재 방식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들이 동일한 저자의 저술이라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 우선, 〈화매〉 '성운전'에는 성운이 기묘사화 당일 가승지가 되어 중종과 남곤 등의 계책에 조력했던 일을 소개하면서 '詳具李長坤等傳'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기묘록보유』 '이장곤전'에 사화 당일 밤의 일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서, 『기묘록속집』의 저자가 『기묘록보유』와 동일인이거나 적어도 『기묘록보유』를 참고했음을 의미한다.

『기묘록속집』의 〈京外官同薦人〉 항목에 수록된 78인에 대한 소개는 적어도 『기묘록속집』의 저자가 『기묘록보유』의 저자만큼이나 기묘사람에 대해 정통한 인사임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현량과 합격자 28인 정도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나 현량과 시행과정에서 추천된 120인을 알고 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편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안로가 「기묘년천과방목」이라는 현량과 합격자들의 방목을 간행한 일이 있다는 사실이다. 노수신의 『蘇齋集』 권7에 수록된 〈己卯年薦科榜目跋〉에 따르면 안로가 방목의 재간행을 추진하고 자신에게 발문을 부탁했다는 기록이 보인다.²²⁾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현량과에 추천된 인사들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안로처럼 천과방목을 재간행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때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기묘록속집』의 〈京外官同薦人〉은 안로가 작성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기묘록보유』와 『기묘록속집』의 저자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기묘록속집』의 저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황상 안로임을 확신할 수 있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기묘록속집』〈주간죄목〉조에는 “만력 무진년 가을 9월 수상의 비망기에 이르기를”이라는 서술이 있는데, 만력 무진년은 1568년(선조 1)이다. 이는 「기묘록속집」의 저자가 선조를 수상이라고 지칭한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기묘록속집」의 저자가 안로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기묘록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사실들 중에서 선조대 기묘사림이 신원되는 일들과 남곤과 송사련 등이 관작을 삭탈당하거나 기묘사림을 모함한 대가를 치르는 기록이 많다. 『기묘록보유』와 『기묘록속집』의 저자가 선조를 금상이라고 불렀다면 그들은 동일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묘록속집』 ‘송사련전’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 부분이 있어 이 같은 추정에 신빙성을 더한다.

내가 일찍이 후진들에게 말하기를, “선현들은, ‘벼슬을 하는 사람은 무당 보살할미 등속을 더욱 멀리하고 끊어야 한다.’ 하였고, 나 역시 ‘집에 있는 사람은 점치고 운명을 말하는 사람을 친근히 하고 서로 접촉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련은 안씨의 집에 출입하며 그 집안의 운명이 비색한 것을 점쳐 안다고 하여, 은혜를 배반하고 화를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얻었으니, 이것은 거울삼을 만한 일이다.” 하였다. 기사년에, 금상께서 夜對할 때에 경연관이 아뢰기를, “지난 기묘년에 남곤·심정이 이미

22) 盧守愼, 『蘇齋集』 권7, 「己卯年薦科榜目跋」: 송웅섭, 2001 「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배경」 『한국사론』 45 참조.

당화를 일으키자, 이랬다저랬다 하는 무리들이 서로 연속하여 상을 바라고 당시의 사류들을 포함하여 모두 어육이 되게 하고, 자기만 벼슬과 상을 보전하여 지금까지 편안히 누리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사림이 통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더 묻지를 않았다. 그 이튿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림이 그 기별을 듣고 교외로 나갔는데 얼마 안 되어 죽었다. 한 딸과 다섯 아들이 있는데, 딸은 漢原守에게 출가하여 자녀가 없어 順原令으로 후사를 삼았고, 아들은 仁弼·翼弼·翰弼인데, 내외 세파가 庶孽로서 법을 속이고, 과거를 보다가 四館으로부터 정거를 당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글을 올려 말하였으나 오히려 풀리지 못하였다.²³⁾

위 기사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기묘록속집』의 저자가 일찍이 주위 사람들에 게 선현들의 말을 인용하여 운명을 점치는 일을 경계한 일이 있는데, 송사림의 경우 안당의 집안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안당의 집안이 좋지 않은 운에 있음을 점을 쳐서 예상하고, 결국 고변하여 화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송사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듯한 기술로서, 저자가 이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서술을 하면서 고양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기사년에 금상께서 야대를 할 때’라는 서술은 역시 1569년(선조 2) 선조의 경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묘록속집』의 저자가 선조대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며, 그것이 바로 안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기묘록속집』〈좌당인원〉조에서 ‘趙抃은 貞愍公의 조카로 본이름은 忭인데 귀양 갔다가 풀려나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기록도 이러한 정황을 더해 준다. 정민공은 안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안당의 조카인 조변이 귀양 갔다가 풀려나 저자가 기록을 남기는 선조 연간까지 생존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역시 인척인 안로가 쓸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기묘록별집』의 경우 수록 내용이 기묘사림의 장소들을 모아 놓은 것이어서 이것이 안로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가 『기묘록속집』만큼 용이하지 않다. 다

23) 고전번역원, 『(국역)대동야승』 『기묘록속집』 ‘송사림전’ “嘗語後進曰 先賢以謂當官者 巫祝尼媪之類 左宜疏絕 余亦謂居家者 推卜談命之人 不可親近交接 祀連者出入安氏家 揣知一門運命屯 背恩構禍 自獲其利 此可鑑也 己巳年 今上夜對時 經筵官進啓曰 頃在己卯南袁沈 貞旣構黨禍 反側之徒 相續希賞 誣陷一時士流 皆爲魚肉 而自保爵賞 安享至今 此實士林之痛憤者也 上不問 厥明未曙 祀連聞其奇 出居郊外 未幾死 有一女五子 女嫁漢原守 無子女以順原令爲後 子仁弼翼弼翰弼內外三派 庶孽冒法赴舉 爲四館停舉 累次呈上言 猶不得解.”

만,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 3편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보았을 때, 『기묘록보유』는 기묘사림에 대한 서술을, 『기묘록속집』은 기묘사화와 관련된 사실들과 이후 신원 관련 기록들을, 『기묘록별집』은 기묘사림이 직접 남긴 상소문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묘록별집』 역시 안로가 기묘사림 및 사화와 관련한 기록들을 모을 때 같이 수집된 자료들로서, 『기묘록속집』에 수록된 상소가 사화 후의 신원상소로만 편집되었다면, 기묘사림 당사자의 상소는 『기묘록별집』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기타 판본들과의 비교

안로의 저술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필자가 확인한 『대동야승』 소수본 이외의 판본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기묘록보유:KO 중B9A8)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기묘록보유:한古朝57-가740) 2종이 더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표 1〉 안로의 저술 소장 현황

서명	도서번호	소장기관	간행 여부	비고
大東野乘	奎 365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필사본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
己卯錄補遺	KO 중B9A8	국사편찬위원회	필사본	『기묘록보유』
己卯錄補遺	한古朝57-가740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	『기묘록보유』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야승』 소수본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본과 국립중앙도서관본은 둘 다 『기묘록보유』만이 수록되어 있고 『기묘록속집』과 『기묘록별집』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규장각 소장 『대동야승』 소수본은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이 모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조대 간행된 김육의 『기묘제현진』은 안로의 저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김육의 저술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과 판본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2> 김육의 『기묘제현전』 소장 현황

서명	소장기관	도서번호	비고
己卯錄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7-가91	『기묘제현전』 필사본
己卯錄	국립중앙도서관	古2153-40	『기묘제현전』 목판본, 일부 필사
己卯諸賢傳	국립중앙도서관	우춘古2513-51	『기묘제현전』 필사본
己卯八賢傳	국립중앙도서관	古2510-50	『기묘제현전』 목판본
己卯錄	한중연 장서각	B9C 5	『기묘제현전』 목판본
己卯錄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이) 920.0513 김육기	『기묘제현전』 목판본
己卯錄	대구가톨릭대 도서관	동 991.1 김67ㄱ 단 단	『기묘제현전』 목판본
己卯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海士 필 13	『기묘제현전』 필사본
己卯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4650-23	『기묘제현전』 목판본
己卯錄	일본중앙문고		『기묘제현전』 목판본
己卯錄	하버드대학 앤칭도서관		『기묘제현전』 목판본

안로의 저술이 현재 3종만 확인되고 있는 것에 비해 김육의 저술은 10여 종이 넘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안로의 저술은 처음부터 간행되지는 않고 필사본만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4. 書名에 대한 검토

안로가 편찬한 기묘사림에 대한 저술은 보통 『기묘록보유』로 일컬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 3편 모두가 안로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할 때,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들 3편을 관통하는 공통의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들 3편의 서명에 모두 ‘기

묘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또 조선후기에는 기묘사림의 행적을 정리한 책자들을 흔히 '기묘록'으로 지칭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²⁴⁾ 지금까지는 『기묘록속집』과 『기묘록별집』의 저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서명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인데, 일단 두 편 역시 안로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3편 전체를 통괄하는 서명으로 '기묘록'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기묘사림의 행적을 정리한 안로 이외의 책자들에서 안로의 저술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안로의 저술 이후에 기묘사림의 행적을 정리한 책자로는 『기묘제현전』과 『기묘명현록』이 있다. 전자는 1639년(인조 17) 김육에 의해, 후자는 1865년(고종 2) 연산의 도통사에서 간행되었는데, 모두 안로가 편찬한 서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편 『대동야승』의 편자는 『기묘록보유』의 권수제 바로 밑에 저자와 관련한 언급을 하고 있어 이 역시 참고가 된다. 그러면 『기묘제현전』·『대동야승』·『기묘명현록』 등에서 안로의 저술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 (ㄱ) 임인년 무렵에 己卯黨籍 한 권을 얻어 보았다. 당화의 전말을 총괄적으로 서술하였는데, 정암 선생 이하로 제제를 당한 내용에 대해 그 화를 당한 경중에 따라 상세하거나 소략하게 서술하여 傳으로 만들었다. 전적에 나열한 것이 무려 백 여 명에 달하니 당대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모두 망라하였다. 이 책은 순흥 안로가 편찬하고 나의 외조부 청강공께서 參定하시었다. ... 지금 충청도관찰사 김육이 己卯八賢을 가지고 와 내게 묻고 있는데 장차 세상에 간행하고자 하기 위함이다.(『기묘제현전』)²⁵⁾

24) 기묘사림의 행적을 기록한 '기묘록'이라는 별도의 서적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안로의 저술 이름에 '보유'·'속집'·'별집' 등과 같은 용어를 근거로, 원본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묘록'이라는 책자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로의 저술 이전에 기묘사림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풍부하게 기록한 책자가 없다는 점에서 별도의 '기묘록'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선후기 '기묘록'으로 지칭되고 있던 책들은 하나 같이 안로의 저술이거나 김육의 『기묘제현전』이었다는 점에서, 별도의 '기묘록'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ㄴ) 기묘록은 김정국이 편찬한 것이고, 보유는 안로가 편찬한 것이다.(『대동야승』 소수 『기묘록보유』)²⁶⁾
- (ㄷ) 구분은 초포 안로 공께서 편집한 것을 잠곡 김육 공께서 발간한 것인데, 널리 배포되지 못하고 또 판본에도 내용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것이 많다. 을축년에 여러 사람들이 재간행하여 판목을 연산의 도통사에 보관하는 것을 논의하였다.(『기묘명현록』)²⁷⁾

사료 (ㄱ)은 김육이 편찬한 『기묘제현전』의 서문으로 1639년(인조 17)에 申翊璽이 작성하였다. 신익성은 1602년(선조 35) 무렵에 안로가 편찬한 ‘기묘당적’을 얻어 본 일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지점은 그가 안로의 저술을 ‘기묘당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국의 기묘당적을 안로의 저술로 착각한 오류이다. 자신이 직접 보았음에도 이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안로의 저술을 본 지가 오래되어서 서명을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로의 저술에 제목이 달려 있지 않아 이 같은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다.

사료 (ㄴ)은 『대동야승』의 『기묘록보유』 첫 머리에 기록된 것이다. 『대동야승』의 편자는 ‘己卯錄補遺卷上 安璐撰’이라고 적고, 卷上 글자 아래에 雙行의 細註로 ‘己卯錄 金正國撰 補遺 安璐撰’이라고 적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동야승』의 편자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인데, 기묘록을 김정국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로는 김정국의 기묘록에 보유를 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료 (ㄷ)은 1865년(고종 2) 연산의 도통사에서 유럽들이 『기묘명현록』을 간행할 때 작성한 범례의 일부이다. 자신들이 『기묘명현록』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원본을 두고 안로가 편집한 것을 김육이 간행했다는 이해를 보이고 있다. 안로

25) 金堉, 『己卯諸賢傳』 「己卯諸賢傳序」 “余於壬寅年間 得見己卯黨籍一卷 愼叙黨禍顛末 而自靜菴先生以下 凡罹文罔者 立傳有詳略 以其受禍之輕重 而列於鈿籍者 無慮以百數則 一時善類盡之一網矣 此書即順興安璐所編次 而外王父清江李公之所參定也. … 今忠清道觀察使金君堉伯厚 以己卯八賢備問余 將欲劊劊而行之世.”

26) 『大東野乘』 『己卯錄補遺』 ‘己卯錄 金正國撰 補遺 安璐撰.’

27) 『己卯名賢錄』 ‘舊本乃蕉浦安公璐所編輯 潛谷金公堉所發刊 而未曾廣布 且多疏脫 歲乙丑域內諸家 合謀重刊藏板于硯山道統祠.’

와 김육이 서로 다른 책을 편찬했음에도 두 사람이 동일한 책을 간행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 관계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모두가 서명과 저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언급들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이들이 기묘사림과 관련된 서적을 간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같은 오류가 조선 후기에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양상이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안로의 저술과 김육의 저술을 모두 '기묘록'으로 지칭하고 있었음이 눈에 띈다.

- (ㄷ) 安貞愍公璿之孫璠所著己卯錄曰 鄭文翼公風骨奇偉 胸次恢曠 外和內剛 早負公輔之望...²⁸⁾
- (ㄹ) 安璠所編己卯錄 本甚疏略 東閣雜記亦然 此皆出於一時傳聞 非如政院日記 故不但於筵奏不能詳悉...²⁹⁾
- (ㅁ) 方今主上 雖以名用公 實不知公也 萬一有小人間之 則公必不免矣 勸之仕 不應終不言其姓名. 出金堉己卯錄³⁰⁾
- (ㄴ) 己卯之禍 尙忍言哉 見己卯錄 讀八(賢)傳而不涕 非人彘也 況同禍家之遺裔乎³¹⁾
- (ㅇ) 其被諸賢賞識如此 始與趙先生同進用 終與趙先生同被禍 後學稱公爲己卯名賢 而金相國堉脩己卯錄. 始補入焉³²⁾
- (ㅈ) 潛谷金相所編己卯錄 末端所載 皮匠康翎人老嫗三件事中 二件有可疑者³³⁾
- (ㅊ) 山人月澗求詩於申龜軒命仁 … 其見重於冲庵蓋如此也. 出己卯錄補遺³⁴⁾

사료 (ㄷ)~(ㅈ)은 대부분 조광조·김정·김구 등 기묘사림의 문집을 간행할

28) 鄭光弼, 『鄭文翼公遺稿』附錄, 鄭文翼公事蹟附錄

29) 金世弼, 『十清先生集』卷四, 附錄 救趙靜庵筵奏東閣雜記

30) 趙光祖, 『靜菴集』附錄 卷一, 事實

31) 朴英, 『松齋集』松齋先生文集序

32) 金應祖, 『鶴沙先生文集』卷七, 參判文公掌令文公兩先生墓碣銘

33) 李喜朝, 『芝村先生文集』卷二十九, 雜記

34) 金淨, 『冲庵集』冲庵先生集年譜 下, 附錄 諸家記述

때 안로와 김육의 저술을 참고하면서 언급된 기사들이다. 눈에 띄는 사실은 두 사람의 기록을 모두 ‘기묘록’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ㄹ)과 (ㅁ)은 안로의 저술을 ‘기묘록’이라 언급하고 있고, (ㄷ)~(ㄷ)은 김육의 저술을 ‘기묘록’이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사료 (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로의 저술을 ‘기묘록보유’로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은 ‘기묘록’으로 범칭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인사들 사이에서 안로와 김육의 저술이 특별한 구분 없이 ‘기묘록’으로 통칭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로가 편찬한 서적들은 편찬 당시에 서명을 무엇이라고 정했는지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안로의 저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저술된 김육의 『기묘제현전』에서도 안로의 저술을 김정국의 ‘기묘당적’과 혼동하고 있었으며, 『대동야승』의 편자도 김정국이 ‘기묘록’을 작성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뿐더러 조선후기 대부분의 인사들이 안로의 저술과 김육의 저술을 ‘기묘록’으로 범칭하고 있었으며, 『기묘명현록』의 편자들은 안로와 김육이 동일한 저술을 남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같이 서명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이유는 우선적으로 전통시대 매체 발달 수준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한계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안로의 편찬 작업이 임진왜란 직전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간행에까지는 이르지 못해 유포 범위가 넓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을 지나며 그의 저술은 몇몇 인사들에 의해 필사되어 전승되다가, 김육이 안로의 저술을 토대로 목판본 『기묘제현전』을 간행하여 안로의 저술보다 『기묘제현전』이 더 많이 유포되자, 서명에 있어서도 다소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기묘제현전』에는 ‘기묘제현전’이라는 정식 명칭 외에도 판심과 권말에 ‘기묘’·‘기묘록’과 같은 명칭이 부기되어 있어 이 같은 혼동을 부추겼을 것으로 보인다.³⁵⁾

한편, 김정국의 「기묘당적」 → 안로의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

35) 『기묘제현전』의 版心에는 ‘己卯’라고 적혀 있고, 권말에는 ‘己卯錄終’이라고 적혀 있다.

집』 → 김육의 『기묘제현전』 → 연산 도통사의 『기묘명현록』 등과 같은 흐름 속에서 서명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적어도 ‘기묘록’이라는 명칭은 안로가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 3편을 편찬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로 자신이 이들 3편을 한데 묶는 ‘기묘록’이라는 서명을 사용했는지는 지금까지의 자료만을 가지고는 확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묘록’이라는 서명이 조선 후기에 범용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안로의 저술 3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기묘록’이라는 명칭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대동야승』에 수록된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 3편은 기묘사림의 후예인 안로에 의해 편찬되었고, ‘기묘록’이라는 명칭은 안로가 이들 3편을 편찬할 무렵에 등장해서 목판본 『기묘제현전』이 간행된 뒤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지칭되었다고 생각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먼저, 저자 안로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순흥 안씨 집안 출신으로 그의 조부 안당과 부친 안처겸은 기묘사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1521년(중종 16) ‘안처겸 옥사’가 일어나며 집안 전체가 몰락했고 안로 역시 노비로 정속되는 시련을 겪다가 1540년(중종 35)에 풀려났다. 이후 안로는 조부와 부친의 신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묘사림의 행적을 정리한 저술에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물로서 『기묘록보유』가 저술되었다.

안로의 저술은 『대동야승』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묘록보유』 외에도 『기묘록속집』과 『기묘록별집』 등 총 3편이 수록되어 있다. 『대동야승』 소수본 이외에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안로의 저술이 소장되어 있는데, 둘 다 『기묘록보유』만 필사된 판본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은 『대동야승』에만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에 대해서는 저자 미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이들 역시 안로의 저술일 가능성이 높다. 『기묘록속집』의 경우 『기묘록보유』와 인물을 설명하는 형식적인 부분에서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중에도 『기묘록보유』를 언급하고 있거나, 宣祖를 수상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로의 저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기묘록별집』의 경우 내용상 『기묘록보유』와 『기묘록속집』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안로가 정리한 자료로 추정된다.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이 모두 안로의 저술일 경우 이들 3편을 관통하는 서명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동야승』의 편자를 비롯해 『기묘제현전』과 『기묘명현록』과 같은 기묘사림 관련 서적을 정리한 편자들도 서명 인식에 있어서 착오가 많았으며, 조선후기에는 안로의 저술과 김육의 저술을 모두 ‘기묘록’으로 지칭하는 혼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료 부족으로 안로의 저술 3편을 통칭하는 서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기묘록’이라는 서명이 유행하는 과정에서 안로의 『기묘록보유』·『기묘록속집』·『기묘록별집』이 그 출발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기묘록’이라는 명칭 자체는 안로의 저술을 계기로 널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논문투고일(2017. 5. 16), 심사일(2017. 5. 18), 게재확정일(2017. 6. 5)

참고문헌

1. 사료

『中宗實錄』, 『大東野乘』(奎 3654), 『己卯諸賢傳』(金埴), 『己卯名賢錄』(硯山 道統祠), 『蘇齋集』(盧守愼), 『思齋集』(金正國), 『鄭文翼公遺稿』(鄭光弼), 『十清先生集』(金世弼), 『靜菴集』(趙光祖), 『松齋集』(朴英), 『鶴沙先生文集』(金應祖), 『芝村先生文集』(李喜朝), 『冲庵集』(金淨).

2. 논문 및 저서

장영희, 1996 「기묘록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4 「16세기 필기의 일고찰-기묘록과 용천담적기」, 『민족문화사연구』 26, 민족문화사학회.

송응섭, 2001 「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배경」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_____, 2005 「기묘사화와 기묘사림의 실각」 『한국학보』 119, 일지사.

安鎮洪 編, 1983 『順興安氏族譜』, 回想社.

AbstractA Review of the Texts and the Names of the 『Gimyologboyu』 :
Centered on 『Daedongyaseung』 kept in Kyujanggak archives

Song, Woong sup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Gimyologboyu(기묘록보유)』 by Anro. Anro is a descendant of the Gimyosalim(기묘사림), and has been struck by his father's political affairs. He has compiled this book with a great deal of effort in organizing the events of gimyosalim. Currently, there are three kinds of 『Gimyologboyu(기묘록보유)』. Among them, 『Daedongyaseung(대동야승)』 contains books in addition to 『Gimyologboyu』, 『Gimyologsogjib(기묘록속집)』 and 『Gimyologbyeoljib(기묘록별집)』, all of which are estimated to have been compiled by Anro. On the other hand, it is presumed that the name of the book named “Gimyolog” which appear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originated from Anro's writings.

Key words : Anro(안로), Gimyosalim(기묘사림), 『Gimyologboyu(기묘록보유)』, 『Gimyologsogjib(기묘록속집)』, 『Gimyologbyeoljib(기묘록별집)』, 『Daedongyaseung(대동야승)』